

2010. 11. 17.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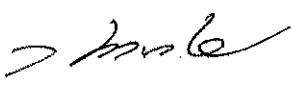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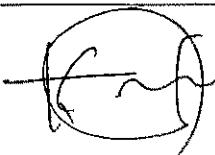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 제천시의회 정
례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
원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최상규 의원 (서명 는 날인)
외 3 인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최상기		
김기상		
이정임		
김꽃임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471
------	------

발의연월일 : 2010. 11. 17.

발 의 자 : 최상귀 의원외 3인

1. 제안이유

- 노령·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보험료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3.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 방 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게재, 관련부서 검토
- 기 간 : 2010. 10. 27(수) ~ 2010. 11. 16(화)(20일간)
- 의견제출
 - 제 출 자 : 제천시장(사회복지과장)
 - 내 용 : 예산 70,000천원 소요예상, 기타 조례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없음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붙 임 : 1.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1부.
 2.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끝.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2010. . . 조례 제 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세대를 말한다.

1.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제천시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미만 세대로 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지원 대상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금액)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은 그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내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원한다.

제6조 (사실조사)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받은 금액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집행부(사회복지과) 검토의견

발의의원	조례안	추진상 문제점	지원대상	예산 (단위:천원)	도 사전검토	비고
최상귀 의원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없음	1,200세대	70,000	미반영	